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9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92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17667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6. 10

판결 선고 2020. 7. 8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176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 3. 21. 부터 이

사건소장부분송달일까지인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인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 판결의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기 재 되어 있지만, 원고가 납부한 인지액의 기준 소가 등에 비추어 청구취지 기재와같이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당하였다.

피고는 원고 가입원해 있던 중에 원고의 통장과 카드등을 보관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 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500만원 및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입원중에 원고를 간병한 간병인에게 400만원을,원고의 피해 보상진행을 위하여 계약한 C회사에 대한 보수로 10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① 2016. 1. 26. D에게 100만원, ② 2016. 2. 5. 과 2. 15. 및 2. 25.E에게 각 100만원씩합계 300만원,③ 2016. 3. 21. 피고의 계좌로 100만원을 각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을1호증의 1내지 3,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E의 간병사업팀장인 D는 2016 . 1. 26.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 소속의F 은 원고를 간병하면서 E 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6 . 3. 21. C 회사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통역인은 원고가 입원해있던 중에 경찰조사, C 회사과사이의 계약,통장 송금 등에 관하여 통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가, 나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를 위 하여간 병비및 손해 사정사에 대한 보수로 원고의 돈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판사 정인섭판사 최미복